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

발의연월일 : 2026. 10. 29 .
발 의 자 : 박미정 의원(1명)
찬 성 자 : 김형우·정민우·김안숙·정지광·안종숙·오지환·이은경·이슬기·김해바른 의원(총9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관계 부처 및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시 관련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여 향후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제2항)

나. 조례가 인용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생략함(안 제9조제3항)

다. 관계 부처명과 기자재 명칭 및 인용규정을 현행화함

(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법」 제4조”를 “「에너지법」 제4조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민생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너지법」제2조제5호”를 “「에너지법」 제2조제5호”로, “같은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구민단체”를 “사업자·구민·구민단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를 “서울특별시와 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구 에너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에너지계획”을 “에너지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으로, “민·관”을 “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따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너지법」 제4조에 ---------- ---------- ---------- ---------- ---------- ---------- ---------- ---------- ---------- ---------- ----------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생 략)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	제3조(정의) ① ---------- ----------. 1. ---------- ---------- --------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 --. 2. (현행과 같음) 3. -------- 「에너지법」 제2조제5호---------- -- 같은 조 ----------

지공급자를 말한다.	----------.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4. ---------- ---------- -------- 등록한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② ----------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구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사업자·구민·구민단체 ---------- ---------- ---------- ----------

②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 서울특별시와 구 ---------- ---------- ----------.
제7조(에너지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계획) ① --------- ---------- ---------- ---------- ---- 구 에너지계획--------- ---------- ---------- --.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1항---------- ---------- ---------- ----------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에너지계획 ------ ---------- ----------.

제8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 구 ----------.
②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의 민·관 협력 방안	2.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민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한다.	의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 ---------- ---------- ----------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생 략)
3.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4. (생 략)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생 략)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박미정		김형옥	
		정민우	
		김안숙	
		이은정	
		정지애	
		오지환	
		안종숙	
		이승기	
		김혜바른	